

발간등록번호

34-9761044-210014-14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 선거운동 중심 -

2021. 7.



일러두기



이 책자는 2022년 실시하는 양대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안내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표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 으로 표기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 으로 표기

제58조제1항 ▶ '제58조제1항'
또는 '§58①' 으로 표기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로 표기

양대선거 ▶ '선거' 로 표기

CONTENTS

PART

01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의 정의	10
2. 선거운동기간	14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7
4. 투표참여 권유활동	20

PART

02

주체별 선거운동방법 및 사례

제1절 일반당원

1. 평상시	
가. 말 또는 전화 이용	24
나. 문자메시지 이용	27
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30
2. 선거운동기간 중	
가. 자원봉사자	34
나. 거리인사 등	36
다.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38



제2절 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사무관계자(수당·실비 포함) ..	40
2. 명함 배부	46
3. 선거공약서 배부	49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51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54
6.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	57

제3절 (예비)후보자

1.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포함) ·	59
2. 인쇄물 이용	
가. 명함	68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72
다. 예비후보자공약집	74
라. 선거벽보	77
마. 선거공보	80
바. 선거공약서	86
3. 시설물 이용	
가. 거리현수막	87
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89
다.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92
라. 어깨띠 등 소품 이용	93
4. 언론매체 및 인터넷광고 이용	
가. 언론매체 이용	97
나. 인터넷광고 이용	103
5. 대담·토론회 이용	105

PART

03

정치자금 운용

1. 정치자금 일반

- 가.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 112
- 나. 회계책임자 117
-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119
- 라. 선거비용 121

2. 후원회

- 가. 후원회 제도 123
- 나. 후원금의 모금·기부 125



PART

04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1. 기부행위 제한·금지	130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149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및 기사 배부	153
4.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 운동	158
5.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162
6.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167
7.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172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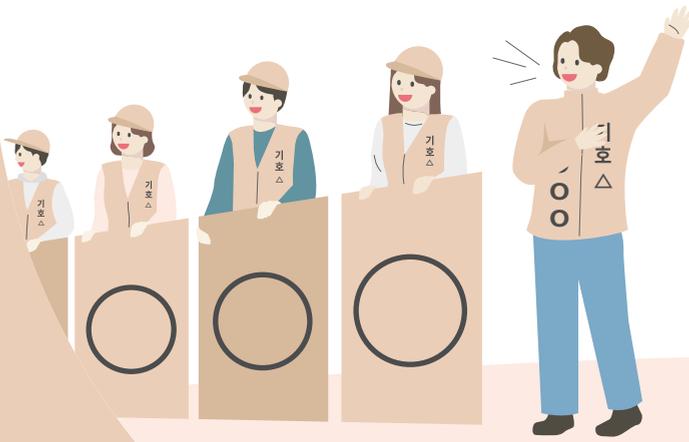
1.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178
2.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180

선거운동이란

1. 선거운동의 정의
2. 선거운동기간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4. 투표참여 권유활동

PART

01



01

선거운동의 정의



법규요약

(법 §58)

-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Tip

Q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연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후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 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인 사실을 표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59조 제2호 및 제82조의5를 준수하여야 함(전송 횟수에 포함).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사진 등을 게재하여 연재하는 행위
 - 법 제8조의3에 따른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는 별론으로 함.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음반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위반
- ✓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후원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자 및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체육대회의 명칭이나 우승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
- ✓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는 기관지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입후보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에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입후보 지역의 산하 조합 등에 배부하는 것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법 제93조 위반됨.
- ✓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법규요약 (법 §59)

-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 ✓ 예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법으로 허용된 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기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 제1항제2호(같은 호 단서 포함)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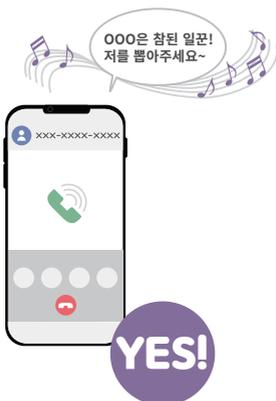
Tip

Q 사전선거운동죄 성립과 입후보 의사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 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기자회견·당원집회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타당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원 및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안녕하십니까? 연기자 000입니다. 000 후보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등)를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 대기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 만 18세인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1am



0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법규요약

(법 §58·§60)

-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다만, 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⑤ 각급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업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 학교 교원
 -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 「지방분권법」 제27조·제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
 -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㉑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다만, 위 ㉑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㉔ 내지 ㉖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사전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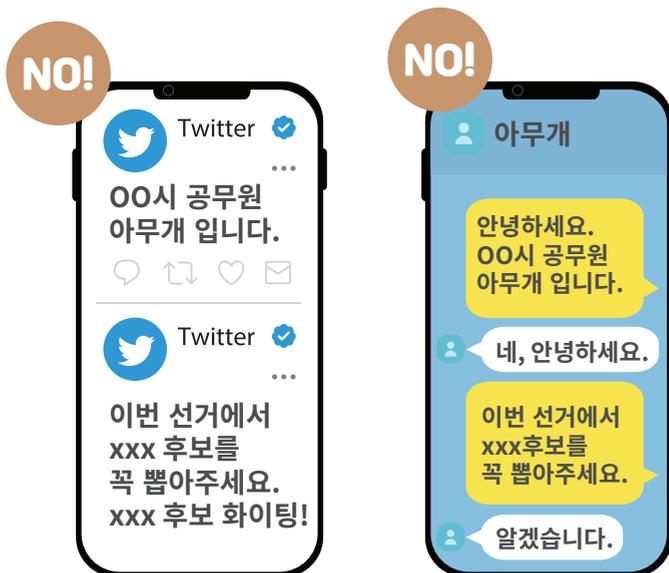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 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등)을 하는 행위
-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6. 5. 9. 선고 95고합415)
-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OO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04

투표참여 권유활동



법규요약

(법 §58의2)

- ✓ 주 체 : 누구든지
-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불가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후보자의 육성으로 녹음한 메시지를 AR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주체별 선거운동방법 및 사례

1. 일반당원
2. 선거사무관계자
3. (예비)후보자

PART

02



01

일반당원

1. 평상시

가. 말(言) 또는 전화 이용



법규요약 (법 §59)

1. 말(言)

-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 기 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 ✓ 방 법 : 말(言)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유의사항
 - 확장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2. 전화

-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 기 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유의사항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됨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금지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내용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말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 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따른 경우는 가능함.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종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송화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음



나. 문자메시지 이용



법규요약

(법 §59-§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기 간 : 언제든지

✓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문자 외의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시장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 등)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아래 '2.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도 같음)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후보자 사칭

- ✓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노4009)

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이용



1. 인터넷 홈페이지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법규요약

(법 §59,
§82의4,
§82의5)

✓ 기 간 : 언제든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방 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시 유의사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각급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2. 전자우편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기 간 : 언제든지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 가능한 형태라면 무방
- (예비)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시장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광고 제외)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한 일반 유권자와의 대담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
- ✓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 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 하는 행위
- ✓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의 로고송을 전송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비방하는 행위
-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함
- ✓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음

2. 선거운동기간 중

가. 자원봉사자



법규요약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방법(예시)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 문자메시지(자동 통보통신 방법 제외)·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발송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대통령선거는 30명 이내,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1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5명 이내)는 1만원 이하 식사료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 등에 위반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 (법 §109②)
- ✓ 자원봉사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
- ✓ 선거사무원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선거벽보·선거공보, 여론조사 결과 내용, 투표용지 모형 등이 게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는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거리인사 등



법규요약

(§105①)

-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 방 법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손가락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할 수 있음.
 - ⇒ 그 수에 제한이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 중 5명 1조(후보자가 포함된 경우 10명 1조)가 되어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히 장구와 북을 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드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 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고합213)



다.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법규요약 (§106②)

-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 장 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 방 법 : 선거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전철역 지하상가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지하철 역구내의 장소 중 승차권을 개찰하기 전의 지역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 ✓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1. 선거사무관계자(수당·실비 포함)



법규요약

(법 §62·§63·
§135, §205,
규칙 §59)

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 ✓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대통령선거 10명,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 선거 5명,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명, 지역구지방의원 선거 2명)을 둘 수 있음.
 -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 수에 포함됨.
 - ⇒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으므로 선거 연락소장을 둘 수 없음
-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 ⇒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장애인 예비후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①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은 모든 장애 정도의 사람 ② 그 밖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을 말함.
- ✓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 누구든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해임·교체한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는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기준(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

구 분	수당	실 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대통령 선 거	선거사무장	70,000	2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지방 선 거	시·도지사,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장	70,000	2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선거사무장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실비만 지급

2.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함.
-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각각 회계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함.

선거사무원수

구 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대통령선거	시·도수의 6배수 이내	· 시·도선거연락소 ⇨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 이하 같음) 수 이내(그 구·시·군수가 10미만 인 때에는 10인) · 구·시·군선거연락소 ⇨ 당해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국회의원지역구, 이하 같음)의 수 이내로 하되, 최소 10인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
시·도의원선거	· 지역구 : 10명 이내 · 비례대표 ⇨ 구·시·군의 수 이내로 하되, 최소 20인	해당 없음
자치구·시·군의 원선거	· 지역구 : 8명 이내 · 비례대표 ⇨ 읍·면·동의 수 이내	해당 없음

-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 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 외에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선임·해임 또는 교체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은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봄.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표지가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는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기준(속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

구 분	수당	실 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대통령 선 거	선거사무장, 시·도선거연락소장	70,000	2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구 분	수당	실 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지방 선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선거사무장	70,000	2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의 선거연락소장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3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
-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실비만 지급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될 수 있음

- ✓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나 정당의 지원 없이 각자가 필요한 실제 비용을 공평하게 각출하여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행위
 - 다만, 공동취사를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반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임·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를 후보자가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재신고하여야 함. 다만,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재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로 봄.

-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위반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에 붙어 있던 사람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발행의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명서 1매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패용하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임(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2.10.17. 2002고합371)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공문서 등 행사) 위반으로 처벌함
-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을 선임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명함 배부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2호·§93①)

1.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 시각까지
-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금지

2. 후보자의 명함 배부

- ✓ 배부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공서 등의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반

- ✓ 정당·(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로고, 정당 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YES!



할 수 없는 사례



- ✓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 ✓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인천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622)
- ✓ 개찰구가 없는 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승차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개찰구가 없는 기차역의 '운임구역'(운임경계선 안쪽 또는 운임경계선이 없는 역의 열차 타는 곳)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을 경력사항으로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음
- ✓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8. 9. 선고 2012고합245)

3. 선거공약서 배부



법규요약

(법 §66)

✓ 작성주체

- 대통령선거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후보자

✓ 배부방법

- 후보자와 그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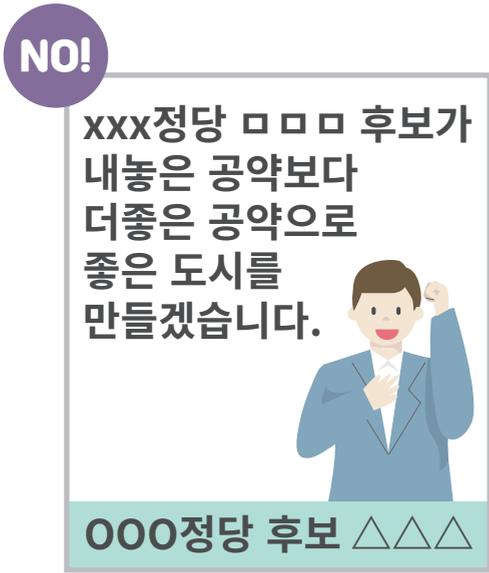
- ✓ 후보자가 E-mail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면서 선거 공약서를 함께 전송하는 행위
-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투입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공약서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전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특정 장소에 비치·살포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법규요약

(법 §60조의3, §68)

- ✓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위의 '사용주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 ✓ 종류 및 규격(금액)

종 류	규 격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
윗옷(上衣)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 운동정보를 보여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는 행위는 위반
-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어깨띠에 표시하는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제작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행위
- ✓ 1명의 선거사무원이 티셔츠·점퍼 등 각각 3만원 이내의 선거운동용 옷을 동시에 입고 선거운동이 가능함
- ✓ 선거운동용 옷을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사무원들이 요일 별로 옷을 바꿔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사무원이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 상징물, 기타 동물모양 등의 마스크트(기호·성명·정당명·캐치프레이즈 등 게재)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성명·홍보문구 등이 표출되는 LED 홍보판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반됨
- ✓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풍선 형태의 디지털 영상홍보장치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선거기간중 거리에서 휴대용 소형카세트로 노래를 틀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어깨띠·표지물 착용 가능함

선거기간 중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법규요약

(법 §79·§102·
§216①)

✓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내 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등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
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
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
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

✓ 연설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무방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일정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법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있어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장과 거리 제한은 없으나,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울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일에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주차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노3155)
- ✓ 연설·대담용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의 전원을 빼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부산지법 2006. 8. 1. 선고 2006고합332 판결)
- ✓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행위



6.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법규요약 (법 §91)

- ✓ 주 체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 내 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에 한함)를 자동차마다 각 5매(선박은 각 10매) 부착 가능
 - ⇒ 위 자동차·선박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후보자 사진은 첩부 불가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직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그 직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위반
- ✓ 선거사무장이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첩부하여 운행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법 제91조에 따른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 선거일에 선거벽보 등 첩부차량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투표소 근처 등 다수의 선거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 ✓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디자인이나 크기를 변형하여 첩부하는 행위



03

(예비)후보자**1. 선거사무소 등 설치(간판·현판·현수막 등 포함)****법규요약**

(법 §60의3,
§61, §63,
§112)

1. 선거사무소 등 설치**■ 예비후보자**

- ✓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만 설치 가능)
-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 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 후보자

- ✓ 설치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 설치 수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소

- 대통령선거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
 - 시·도지사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 :
선거사무소 1개소,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 :
선거사무소 1개소,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지방의원선거
 - 지역구후보자 : 선거사무소 1개소
 - 비례대표 추천 정당 :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각각 선거사무소 1개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 '식품접객영업소'란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을, '공중위생영업소'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을 말함.
-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그 다른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 기 타

- 정당·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신고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간판 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연락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경우 후보자 신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음.

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 ✓ 주 체 : 정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한함.
- ✓ 설치시기
 - 선거사무소 :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후 게시한 간판 등 사용 가능
 -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 후부터
 - ⇒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연락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신고한 경우 그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선거대책기구 :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 ✓ 게시방법 등(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경우도 동일)
 - 수량·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론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 게재가능

정당의 당사 게시 간판·현판·현수막(법 §145, 규칙 §47의2)

- 주 체 : 정당(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
- 게재내용 : 선거기간 중에는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
 - ⇒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
 - ⇒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간판 등과 선거벽보 등 철폐 가능

정당선거사무소 게시 간판·현판·현수막(법 §61의2)

- 주 체 : 정당(중앙당,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장
- 게재내용
 -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게시방법 등
 - 수량·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론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후원회사사무소 게시 간판(법 §145)

- 설치시기 : 후원회 운영기간 중
- 설치장소 : 사무소 1개소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

가. 선거사무소 등 설치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 주택이나 아파트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잡무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하는 노무자를 두고 역무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전송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홍보문구 등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마네킹은 통상적인 간판으로 볼 수 없어 설치할 수 없음
-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 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 시민, 지인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3노302 / 전주지법 2012고합292)

- 예비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가 지정한 1명)·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명함배부 등 법 제60조의3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정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03)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선거기간 중 수차례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3노302)

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행위
- ✓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및 ‘자원 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 건물 옥상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기 위한 지지대 설치 행위
- ✓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건물 전체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실제 함께 활동하였다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후원회의 사무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내용을 국회의원○○○후원회 명의로 함.)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창문이나 외벽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홍보하는 인쇄물을 부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창문 포함)에 간판·현판·현수막 외에 별도의 인쇄물이나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부착할 수 없음

2. 인쇄물 이용

가. 명함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2호·§93①)

1. 예비후보자의 명함

✓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 마감시각까지

✓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가능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예비후보자의 경우 법 §60조① 4호~8호 제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금지

2. 후보자의 명함

✓ 배부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을 겸하며,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규 격 : 예비후보자 명함과 동일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 존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는 없음.
- ✓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정된 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호소하는 행위
- ✓ QR코드에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 명함을 법정 규격 범위 안에서 '씨앗명함'이나 '책갈피' 형태로 제작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없음
- ✓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개찰구 안 등 명함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419)
-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
-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정당을 탈당하지 않았음에도 '무소속'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민 거주자들의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대법원 2015. 3. 27. 선고 2015도2426)
- ✓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는 행위(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 ✓ 명함과 거리현수막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니라 변경된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여 배부·게시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합385)
- ✓ 후보자가 소속된 산악회의 회원이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해 노상에서 명함을 땅바닥에 뿌린 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합200)
- ✓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 역임과 시간강사를 '외래 교수'로 표기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 15530)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4호)

1. 작성방법

✓ 종 수 : 1종

✓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대통령선거 16면) 이내

✓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다만,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2. 발송방법

✓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횟 수 : 제한 없음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방 법 :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일부 지면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반송용 우편엽서를 절취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아파트 경비실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다. 예비후보자공약집



1. 작성주체 :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

법규요약

(법 §60의3① 제4호)

2. 작성방법

- ✓ 종 수 : 1종
- ✓ 수량 및 면수 : 제한 없음.
- ✓ 규 격 : 제한은 없으나, 도서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 게재사항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 의무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제출 및 배부

- ✓ 제출 :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2권을 제출
- ✓ 배부방법 :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 게시)하는 행위
-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그 밖의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 ✓ 1인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 다만,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라. 선거벽보



법규요약

(법 §64)

- ✓ 작성·제출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대통령선거) 및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
- ✓ 규격·지질·중수 : 길이 53cm 너비 38cm(대통령선거는 길이 76cm 너비 52cm), 100g/m²이내의 종이, 1종
- ✓ 게재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
 -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함) 등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 해당 선거구선관위는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 제출시기 등
 - 제출시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대통령선거는 3일)까지
 -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제출처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
 - 첩부시기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 섬 및 산간오지 지역은 3일)까지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법 제64조제1항 '정규학력'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 중퇴, 수료, 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함.

-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게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 [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 ✓ 선거벽보 등 경력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당선무효판결 이전의 의원직 보유기간을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의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 자연 풍경 또는 공사현장 사진(인물은 없음)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뒷모습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만이 찍힌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NFC 칩 부착 및 QR코드 삽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상적인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취급 과정에서 NFC 칩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외에 다른 인물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
-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 ✓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하는 행위(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52)
- ✓ 일부 후보자와의 단일화와 2,000여명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가지고 '○○도민추대 단일후보'라는 내용으로 선거벽보 등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15. 3. 13. 선고 2015도640)

마. 선거공보



법규요약

(법 §65)

1. 책자형 선거공보

✓ 작성·제출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대통령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및 후보자

✓ 규격·종수 등

- 규격·종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수 : 16면 이내(대통령선거), 12면 이내(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8면 이내(지방의원선거)

✓ 게재내용

-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선거명·선거구명 게재
-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 및 그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 전과기록 :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죄명(실효된 형 포함)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 제출 및 발송시기(점자형 선거공보도 동일)

구분	제출(배부지역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	발송(우편)
공보발송 신청자용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대통령선거는 6일)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발송
거소투표 신고인용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
매세대용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 (대통령선거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접수 거부 사유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경우
-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2. 전단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한함)

✓ 작성·제출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규격·종수 등

- 규격·종수 : 길이 38cm 너비 27cm 이내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 수 : 1매(양면)
- 작성수량 :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앞면에 명칭(‘전단형 선거공보’)·선거명 게재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제출 및 발송시기**

- 제 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발 송 : 투표안내문 발송 시 동봉 발송

3. 점자형 선거공보

✓ **작성·제출자 : 후보자 추천 정당(대통령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및 후보자**

- ⇒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규격·종수 등**

- 규격·종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 수 :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면수의 두배 이내
-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음.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2면에 게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 3, 4면에 계속하여 게재 가능
- 앞면에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해야 함.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소득세 납부실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하여 게재하는 행위
- ✓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공보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2832)
-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 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88)
- ✓ 선거공보에 유사학력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 게재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2000고합544)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행위(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6. 8. 4. 선고 2006고합72)
-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란에 일부 죄명과 그 형 및 확정 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형은 기재하였으나 죄명과 확정 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36)
-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게재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346)
-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죄명만 게재하고 ‘선고형 및 확정일자’를 게재하지 아니하여 군의원 재직 중 범죄를 알 수 없도록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합156)
- ✓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교수로 재직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수 경력으로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20. 선고 2014고합32)

-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수량을 초과하여 선거공보를 인쇄·제공하는 행위 및 공고수량을 초과한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상가 등에 배부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합486)
-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음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350)
- ✓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고한 행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바. 선거공약서



법규요약

(법 §66)

- ✓ 작성주체 : 제2장제2절3.(선거공약서 배부) 참조
- ✓ 규격·종수 등
 - 규격·종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 면수 : 32면 이내(대통령선거), 16면 이내(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12면 이내(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만 게재 가능함.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표기)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 배부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3. 시설물 이용

가. 거리현수막



법규요약

(법 §66)

- ✓ 주 체 : 후보자 추천 정당(대통령선거) 및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
- ✓ 설치시기 :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 ✓ 재질·규격 : 천으로 제작, 10m 이내
- ✓ 게시매수 :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 ✓ 게시방법
 - 관할 구·시·군선거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첨부·게시하되, 오·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게시함.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현수막에 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 정당명을 두 번씩 게재하는 행위

- ✓ 장소를 옮겨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 같은 크기·도안·내용의 현수막 두 장을 앞뒤에서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하여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
- ✓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해당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하나의 읍·면·동에 2매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함
 - 선관위에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종전에 교부받은 표지를 옮겨 첩부해야 함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행위
-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법규요약**(법 §79-§102·
§216㉔)

- ✓ 주체·시기·내용 등 : 제2장 제2절 4. 참조
- ✓ 자동차와 확장장치의 수량 등
 -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1대·1조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장장치 1조
-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차량부착용 확장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 ⇒ 녹화기 화면규격 제한
 - ▶ 대통령선거 : 후보자용(제한없음), 시·도선거연락소용(10㎡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용(5㎡ 이내)
 -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후보자용(10㎡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용(5㎡ 이내)
 -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5㎡ 이내
 -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3㎡ 이내

Tip**Q 공개장소 연설·대담 주의사항**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장과 거리제한은 없으나, 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할 수 있는 사례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장장치에 선거벽보·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정책·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함.
- ✓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에 일반 대중가요 등 기존의 음원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 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후보자 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화통역을 방영하거나 후보자가 연설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함께 탑승해서 수화통역하는 행위
- ✓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후보자의 공약·경력 등을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녹음물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부착용 확장장치나 휴대용 확장장치 외에 별도로 확장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 연설·대담용 차량의 크기나 톤수, 확장장치의 출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다.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법규요약 (법 §91)

✓ 주체·시기·내용 : 제2장 제2절 5. 참조

✓ 수 량

- 대통령,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이내
- ⇒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함.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동차의 무제한적 사용은 도로교통의 무질서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 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자전거에 트레일러와 같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견인하도록 제작·사용할 수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영업 중인 여객선은 「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라. 어깨띠 등 소품 이용

**법규요약**

(법 §60조의3,
§68)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 주 체 : 예비후보자
- ✓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 ✓ 게재사항 :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2. 후보자의 선거운동

- ✓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 ✓ 종류 및 규격 : p51 제2장 제2절 4.(어깨띠 등 소품이용)
-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방 법 :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표지물을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보조기구를 중증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보아 표지물 부착이 가능함
- ✓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확정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후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 ✓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사용하는 행위
 - 다만,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어깨띠에 휴대용 확장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고합224)
 -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
-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선고 2015도159)

▶ 후보자의 선거운동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티셔츠의 외관·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인원에게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면서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서 달라”고 부탁하여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 ✓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문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행위
 - 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 끈을 몸에 붙이는 경우에도 불가

4. 언론매체 및 인터넷광고 이용

가. 언론매체 이용



법규요약

(법 §69·§70·
§71·§72·§73·
§74)

1. 신문광고

- ✓ 주 체 :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 ✓ 매 체 :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함)
- ✓ 시 기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 ✓ 횟 수
 - 대통령선거 : 총 70회 이내
 -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 까지 마다 1회를 더한 수
- ✓ 광고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함),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색도 및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 ✓ 광고절차
 - 신문광고 전에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 게재
 - 일간신문 경영·관리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음.

2. 방송광고

- ✓ 주 체 :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 ✓ 매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포함)을 말함.
-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 횟 수
 - 대통령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 광고내용 및 방송일시 통보
 -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방송시설 경영자는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방송광고의 일시와 내용 등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해야 함.

3. 후보자의 방송연설

- ✓ 선거별 연설횟수 등

구 분	연 설 자	1회 연설 시간	연 설 횟 수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2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5회 이내

구 분	연 설 자	1회 연설 시간	연 설 횟 수
자치구·시·군 의장 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2회 이내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정당별 비례대표 시· 도의원선거구마다당해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회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산입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연설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 후보자(연설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반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
 -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중앙선관위가 그 일시를 정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일 전 3일까지 이용할 방송시설명 등을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주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연설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추천정당이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 자)
- 횟 수 : 제한 없음
- 내 용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
 - ⇒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경력방송

- ✓ 주 체 : 한국방송공사(KBS)
-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 방 법 :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 이용
- ✓ 선거별 방송횟수 등

구 분	1회 방송시간	방송횟수
대통령선거	2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8회 이상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2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3회 이상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상

- ✓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직업 기타 주요 경력
- ✓ 경력방송 원고 제출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원고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제출
⇒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봄.
- 후보자가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 원고를 작성하여 송부함.
- 경력방송 원고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함.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주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횟 수 : 제한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무가지신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이라면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
- ✓ 방송사가 선거법 제71조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 동영상을 다른 방송영상물과 같은 방법으로 자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실시할 때 앞뒤 시그널 음악 또는 배경음악 (클래식 음악 등 가사가 없는 일반 경음악)을 사용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후보자를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 종합편성채널 및 IPTV는 「공직선거법」 제70조의 방송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방송광고를 할 수 없음



나. 인터넷광고 이용


법규요약
 (법 §82의7)

- ✓ 주 체 : 후보자 추천 정당(대통령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
- ✓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방 법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인터넷광고의 형식·크기(용량)·규격은 제한 없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후보" 검색 시 "○○후보"가 검색되고 그곳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트위터·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 ✓ 인터넷뉴스운영자가 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하단 “후보자”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앞·면을 스캔하여 사진과 약력을 배너로 제작·게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한 행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108)

NO!

선거운동기간 전



5. 대담·토론회 이용



법규요약

(법 §81·§82·
§82의2)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주 체 : 단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초청대상자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함.)[이하 이 표에서 '후보자 등'이라 함.] 1인 또는 수인

✓ 개최신고

-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또는 개최장소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초청 후보자 등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고
- 1명 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회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를 초청하거나, 1회에 1명 또는 2명 이상의 후보자 등이 참석하여 순번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맨 먼저 개최할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시에 개최계획을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옥내에서 개최하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첩부할 수 없음.
-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함.
-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 개최비용은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2.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 주 체 :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 다만,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개최 가능

- ✓ 초청대상자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자)

✓ 초청 및 진행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개최주체 및 횟수 등

구 분	개최주체	개최횟수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시·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 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방 법 :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자치구·시·군의장 선거에 한함)

- ⇒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
- 초청대상자 :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라 초청 대상 선정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장소에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위
- ✓ 대학교 학생회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천명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공무원노동조합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방문 또는 화상인터뷰, 인터넷 문자통신, 동행 취재는 법 제82조의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종합유선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 및 인터넷언론사가 중계방송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 또는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정치자금 운용

1. 정치자금 일반
2. 후원회

PART
03



01

정치자금 일반

가.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2, §3)

-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장당준비위원회 포함),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정당 및 중앙당장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1회 20만원,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1회 50만원(선거비용은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Tip

Q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공직선거 입후보,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관련 비용,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로, 경선거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행위
 -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위반
-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보좌관·비서관·비서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이나 사망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소속 보좌직원의 생일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 부터 당비를 받아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행위
- ✓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교섭단체 운영비를 납부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소속 상임위원회의 부처·산하기관·유관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으로 취임 축하난(蘭)을 제공하는 행위
 -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정치자금으로 축·부의금 제공하는 것은 위반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의 제작·배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정당이 여성 정치인재 육성 및 전문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당의 여성 유급사무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 위원에게 해당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따른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원하는 행위
 - 여성정치발전비로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 제작경비를 지원 하는 것은 위반(국고보조금을 소속 당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에 한함)
-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포럼' 운영 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투표지 보전신청,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및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증거보전과 재검표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법원 납부 금액 및 변호사비 등 소송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정당의 여성정치발전비(「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의 경상보조금)로 소속정당 추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30일 경과 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
-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 누구든지 당직자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행위
-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대변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변인 논평과 관련한 언론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결과에 불문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출가능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 정당선거사무소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행위

-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정당의 명의로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명이가 아닌 실제 성금을 납부한 자의 명의로 시설 등에 전달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집회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의 후원금을 지출하는 행위
 - 「정당법」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단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 ✓ 연체료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이 연체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됨

나. 회계책임자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4)

- ✓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자로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회계책임자 1명을 별도로 두어 정치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회계책임자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선임권자

-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의 대표자
- 후원회의 대표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함
-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 자격요건 :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그 직을 가지고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36)

✓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4721 판결).
- ⇒ 다만,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가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
-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포괄위임 불가).

✓ 정치자금의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회계책임자 선임권자가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정치자금 지출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라도 정치자금 수입처리는 불가

- ✓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여부 불문)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를 지출하는 행위
- ✓ 회계책임자가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도6937 판결)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를 해당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행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2. 14. 선고 2004고합 118)
- ✓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연락소장이 중앙당의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05. 5. 2. 선고 2005노257)
- ✓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 된 통장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5노205 판결)
- ✓ 정치자금 지출용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1개만 사용 가능

라. 선거비용



법규 요약

(법 §119)

- ✓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의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 구입비용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료 등 음식물 제공비용 ·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후보자·선거사무장 등과 통모한 제3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비용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 방송연설을 위한 시연회에 소요된 비용 등 · 경선택금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납부금·수수료 · 선거사무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 제3자가 후보자 등과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 정리비용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과 다르게 그 지출 규모에 제한을 받고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사례 예시



- ✓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선거운동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동영상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님
-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건물 주인이 현수막이 부착된 건물 외벽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함
- ✓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인부임을 주는 것은 역무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 지출로 이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함

2. 후원회

가. 후원회 제도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6, §8, §9,
§10, §11)

- ✓ '후원회' 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

✓ 후원회지정권자

- 중앙당(중앙당당준비위원회 포함)
- 대통령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후원회의 대표자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후원회의 대표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후원회 사무소·연락소 설치

-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 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 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앙당후원회·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제한 없음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중앙당장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 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 및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까지 기부할 수 있음.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음.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능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함.

나. 후원금의 모금·기부



법규요약

(「정치자금법」
§10, §12, §14,
§16)

✓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 모금기간 : 후원회 등록일부터 선거일(후보자사퇴 시 사퇴당일)까지
 - 모금한도액
 - 중앙당후원회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모금방법
 -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모금
-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 기부한도액 :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
 - 기부방법
 -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음)
- ⇒ 부득이하게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음.

-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내에 기부 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봄.
-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지정권자에 대한 기부 시 후원회의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지정권자의 수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부하여야 함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1. 기부행위 제한·금지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및 기사 배부
4.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
5.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6.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7.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PART

04





법규요약

(법 §112·§113·
§114·§115·
§116)

1. 기부행위의 개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단체·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지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함.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함.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2. 주체별 제한내용

조문	주 체	제 한 기 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법 §113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법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 준비위원회 포함)·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법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제113조부터 제115조 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가 직접 주는 행위 및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처 등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 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직무상의 행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불문함.
-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Tip

Q 기부행위 제한 취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가. 축·부의금품 제공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 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반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경우는 위반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NO!



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 종친회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반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
- ✓ 공익재단이 재단에 재능을 기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예능교육 등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습지도·예능교육 등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위반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6. 4. 10. 선고 96노350)
-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7. 12. 27. 선고 95노657)
-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금지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는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됨(이하 같음)
-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정당에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의참석 당원이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그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상응하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정당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제3자가 개인경비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이나 통상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료(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3천원 이하 다과류를 말함)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외)·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료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명,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15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명을 말함(이 경우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
-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구호·의연금품 제공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NO!

연말연시



마. 화환·화분 제공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물·기념품 제공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 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 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 포함)·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의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이 경우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 실시 행위는 무방
- ✓ 공공기관 청사 준공식에서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그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로당에 전달하거나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는 것은 무방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사. 상장·부상 수여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아. 무료민원상담 등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 ✓ 대학교병원 전문의인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순회무료진료행사'에 참여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헌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명함을 교부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21)

0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법규요약

(법 §90)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콧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으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당원협의회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의 명칭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반
-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진 게재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예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 ✓ 선거기간 중 정당행사장 앞에서 선거구민이 '000 후보에게 묻는다. □□민중항쟁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 가입, □□시위 기록을 밝혀라! 수많은 시민이 감옥가고 탄압받았을 때 000은 무엇했나?'라고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39)

0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및
기사 배부

법규요약

(법 §93①,
§95①)

1.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허용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상시
-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 정당·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배부하여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해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의 당직자가 자신의 소속 정당 명칭과 그 직책이 게재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과 인사를 하는 때에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단체의 명칭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위반

YES!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 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 및 호별로 광범위하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27)
-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임의로 구청 민원 봉사과 명의를 봉투에 넣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행위(대구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527)



1. 호별방문의 제한

✓ 주 체 : 누구든지

법규요약

(법 §106·
§107)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Tip

Q 호별방문의 성립조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선거법 제106조의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포함함. 다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2.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상시
-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가. 호별방문의 제한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나 소속 당직자, 입당을 추천한 소속 당원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규 당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당원증과 의례적인 내용의 입당축하편지를 당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 ✓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1. 9. 선고 2010고합35)
-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 선고 2012고합86)
- ✓ 예비후보자가 군청, 경찰서 등의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명함 교부 및 지지호소를 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19. 선고 2014고합29)
- ✓ 예비후보자가 학교 교무실·각 교실 및 관공서 사무실, 지방법원장 부속실과 지방검찰청 지청장 부속실 등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 17290 판결)

NO!

안녕하세요,
OOO후보자
투표 부탁드립니다.



나.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 결제관행의 개선 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됨.
- ✓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안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됨.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날인을 받거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
- ✓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 갑(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 (전주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1. 허위사실공표 금지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법규요약

(법 §110②,
§250, §251)

- ✓ 주 체 : 누구든지
-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 주 체 : 누구든지
-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 ✓ 주 체 : 누구든지
-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

Tip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별할 수 없음.

2. 후보자비방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특정 지역 등 비하·모욕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 금지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연설 중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이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공표하는 행위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행위
- ✓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의 '경력' 또는 '약력'란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행위(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 ✓ 고등학교졸업학력고사시험에 합격한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만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 ✓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 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설·대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423)
- ✓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후보자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노3676)
- ✓ 거리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도1078)
- ✓ 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라고 기재함은 물론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 ✓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 ✓ '○○재단의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현수막·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267)
- ✓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39)
- ✓ 선거공보 제출 당시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은 금 44,231,000원이고 직계존속의 세금체납액은 금 1,271,000원임에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체납액누계'란을 공란으로 작성한 행위(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2713)
- ✓ 2014. 5. 13 특정 정당을 탈당하였으나, 2014. 5. 7 ~ 5. 9까지 선거구민 거주자들의 우편함에 후보자의 이름 및 '무소속'이 기재된 명함을 투입한 행위(대법원 2015. 3. 27. 선고 2015도2426)
- ✓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2429)
- ✓ 선거사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전과없음'이라는 허위사실이 선거공보에 기재된 것을 알고도 공표한 행위(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759)

06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법규요약

(법 §87②,
§89①)

1. 사조직 설치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상시
- ✓ 금지내용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 금지기간 : 상시
- ✓ 금지내용 :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 예 외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Tip

유사기관이라 함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이나 사무실 등 선거사무소 외에 별개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 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 ✓ 정당 소속 및 무소속후보자의 단일화모임 구성 등

 -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반
 - 정당 소속 및 무소속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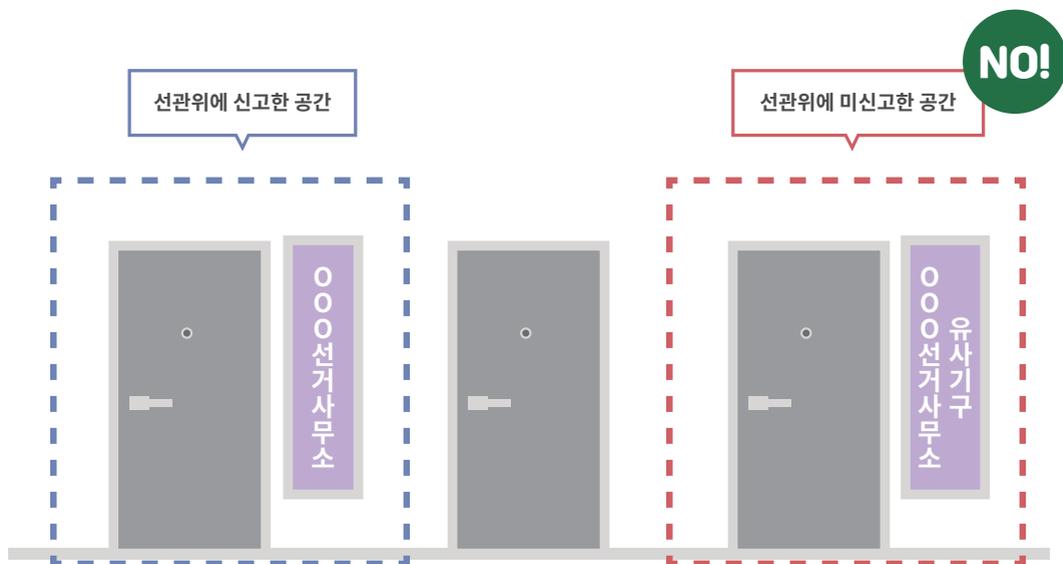
- ✓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기간 전에 설치·운영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참여하거나, 기존의 단체·조직을 그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소속 당원 외에 다수의 비당원이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 정당이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을 유세지원단·구전홍보단 등으로 조직화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등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당사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대전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6고합26)

-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노344)
- ✓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 ✓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 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고합91)





법규요약

(법 §244)

1.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등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상시

✓ 금지행위

-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함은 공식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로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공식선거법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516 판결)
- 상기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 포함)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포함)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공정선거지원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 반드시 그 장비를 가지고 선거단속업무를 수행중인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

2. 당내경선에서의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 금지

- ✓ 주 체 : 누구든지
- ✓ 주관적 요건 :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탁한 경우
(법 제57조의4)
- ✓ 금지행위 : 위 '1. 금지행위'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던 투표용지 중 수십 매를 집어 던지고 다른 투표용지 2매는 입에 넣어 씹고 또 다른 2매는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개표소를 교란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고합220)
-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한 행위(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 ✓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선관위 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473)
- ✓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관위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 ✓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교부 받은 후 이를 찢어버려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확인서 1부를 훼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42)
-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431)
- ✓ 선거사무원의 표찰을 잡아 뜯고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고합177)
- ✓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행위(대전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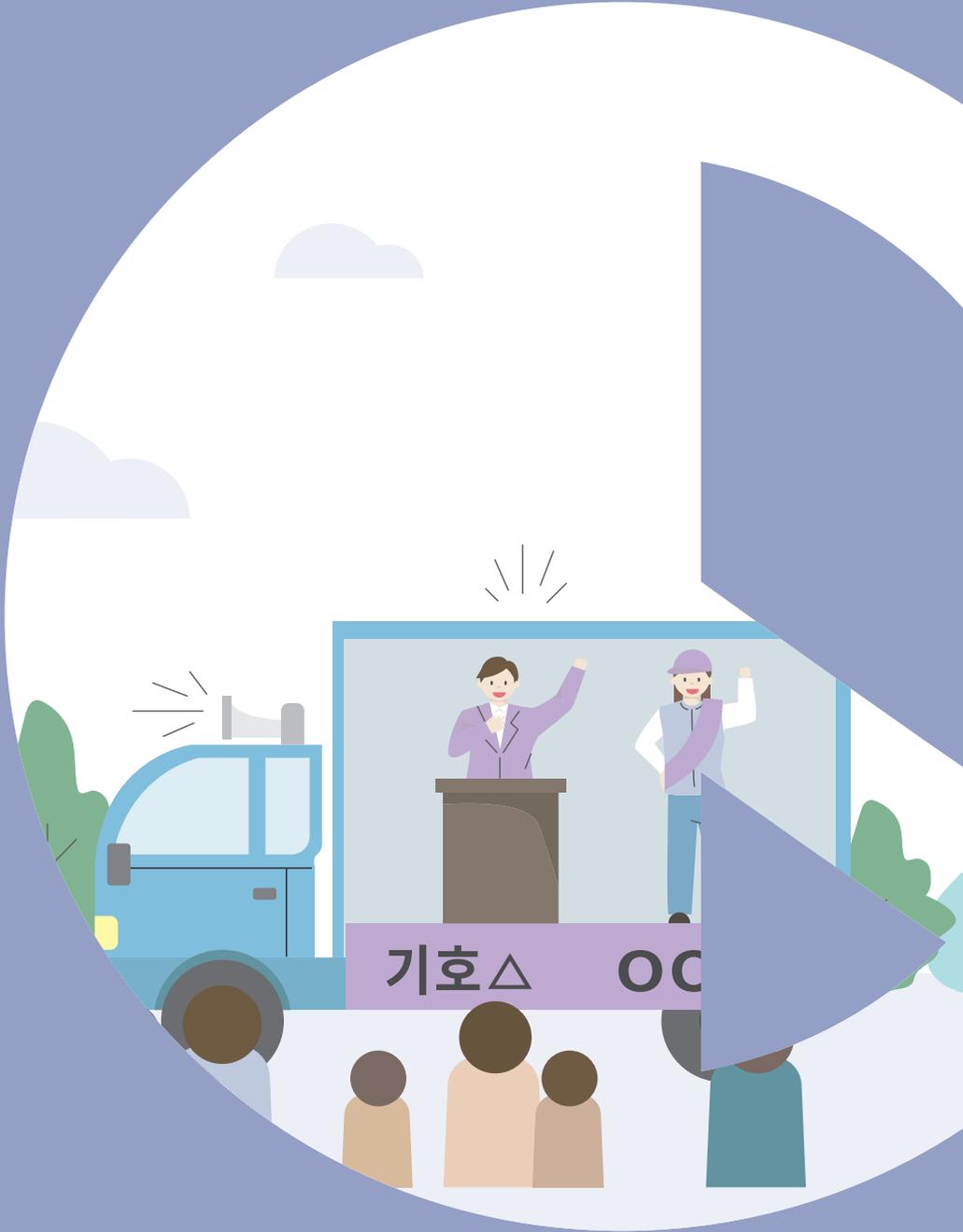




부록

1. '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2. '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01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 일	관계법조
'21. 6. 15까지	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12. 9까지	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예비군 중대장 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법§53①
'21. 12. 9부터 '22. 3. 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2. 1. 8부터 3. 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9부터 2. 13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 15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 15부터 3. 8까지	화 화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82조의2
2. 17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 20까지	일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2. 23부터 2. 28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②, 규§136의15
2. 23까지	수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2. 24까지	목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5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 27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 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3. 29까지	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5. 18이내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02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2(월)]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부터 6. 1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부터 5. 14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내	법§37, 규§ 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부터 5. 13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 20
5. 18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부터 5. 31까지	목 화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82조의2
5. 20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5. 20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 27부터 5. 28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3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 ①, 민법§ 161 규§51의3①
7. 31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 ①, 규§51의3②

2022년 양대선거 대비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 선거운동 중심 -

기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발행 2021. 7.

디자인·인쇄 (주) 프리비 02-2274-1492